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201-2018-026964

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-1 하이원 제12층 제1207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2018년5월3일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-1 하이원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10-5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구조지붕 16층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중근린생활시설 지3층 287.2㎡ 지2층 727.77㎡ 지1층 748.25㎡ 1층 372.13㎡ 2층 643.47㎡ 3층 643.47㎡ 4층 643.47㎡ 5층 643.47㎡ 6층 643.47㎡ 7층 643.47㎡ 8층 643.47㎡ 9층 643.47㎡ 10층 643.47㎡ 11층 643.47㎡ 12층 643.47㎡ 13층 643.47㎡ 14층 544.56㎡ 15층 544.56㎡ 16층 544.56㎡	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-1		대	1032.5㎡	2018년5월3일 등기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-1 하이원 제12층 제1207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8년5월3일	제12층 제1207호	철근콘크리트구조 59.81㎡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1 소유권대지권	1032.5분의 8.16	2018년4월27일 대지권 2018년5월3일 등기	
2			별도등기 있음 1토지(을구 14(1)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, 을구 14(2)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, 을구 16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) 2018년5월3일 등기	
3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18년5월15일 등기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8년5월3일 제169017호		소유자 심준수 421230-*****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529번길 10-11(계산동)
2	소유권이전	2018년5월15일 제182934호	2017년1월15일 매매	소유자 정재호 831123-*****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,101동 110호(흑석동,명수대현대아파트)
3	소유권이전	2022년7월21일 제249977호	2022년7월2일 매매	소유자 조석훈 800608-*****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82-3(대명동) 거래가액 금287,000,000원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8월27일 제4523383호	2025년8월27일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201-2018-026964

[집합건물]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8-1 하이원 제12층 제1207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조석훈 (소유자)	800608-*****	단독소유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북개로 82-3(대명동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8월27일 제4523383호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	조석훈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임차권설정	2024년2월8일 제54308호	임차보증금 금287,000,000원 임차권자 조혜라	조석훈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